

한세에스24문화재단

인문학연구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세에스24문화재단(이하 “재단”) 정관의 시행 세칙인 「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연구 활동 및 학술, 교육 지원사업에 준하여 시행되는 ‘인문학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운영 방침을 규정한다.

제2조(사업 목적) 인문학 육성을 위한 ‘인문학연구지원사업’은 “재단”의 장기적 연구 사업으로서 국내 인문학의 탐구와 발전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국내 인문학 분야의 우수 연구를 발굴하여 인문학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단의 역할) ‘인문학연구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재단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본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방향, 시행 시기 등 지정
- 2) 본 사업의 사업공고 및 접수
- 3) 본 사업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지침 지정
- 4) 본 사업의 선정자에 대한 사업비 관리
- 5) 연구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관리 감독
- 6) 기타 운영 관련 제반 업무 운영

제4조(지원 범위 및 분야) 인문학 분야의 연구과제를 지원범위로 한다. 지원 영역은 연구논문 집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분야’로 구성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자는 최근 5년간 KCI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지(A&HCI, SCOPUS) 주저자 논문 2편 이상의 연구경력을 지닌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국내외 대학의 강사 및 교수, 연구소 소속 연구자 또는 무소속 개인 연구자로 주제에 맞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연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 한도) 지원한도는 편당 1,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규정) 본 사업의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 1) 심사위원장 1명
- 2) 심사위원5명 (심사위원장 포함) 필요에 따라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3) 심사규정은 재단에서 정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 1) “재단”은 연구자의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여 연구비를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자 또는 연구자가 지정한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지원 약정에 의거 연구비를 지급한다.
- 2) 연구비는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게 집행한다.

- 3) 연구자가 지정한 산학협력단은 연구자의 연구비 내역 구성 및 집행,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이에 따른 간접비는 전체 연구비의 5% 이내로 지정한다.
- 4) 연구자가 산학협력단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재단” 사무국과 상의하여 지급 방식을 정하도록 한다.

제9조 (지원과제의 관리) “재단” 사무국은 과제별로 지원 대상자 및 기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원 과제별로 현황표(“재단” 홈페이지-관리자페이지)를 작성 비치한다.

제10조 (연구결과물의 정의) 연구분야의 연구결과물은 학술논문으로서, KCI 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지(A&HCI, SCOPUS)에 게재된 논문을 의미한다.

제11조 (연구결과물의 귀속 및 이용)

- 1)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법상, 공법상, 지식재산권법상의 모든 권리 중 일신 전속적인 것은 연구자에게 귀속된다.
-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재단”에 대하여 연구 약정으로 발생한 연구결과물을 “재단”이 기간 제한 없이 국내외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또한 “재단”은 본 연구 결과물 및 연구지원 사실을 “재단”의 광고 및 홍보 등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3) “재단”은 연구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구자를 대신하여 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초상권, 동일성 유지권 등의 행사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행사를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다.

- 4) “재단”은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따라 연구자가 “재단”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이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연구자 의무 사항)

- 1) 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1년 내 KCI 등재지 또는 연구 종료 후 2년 내 국제학술지(A&HCI, SCOPUS)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2) 연구주제와 내용은 다른 간행물이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3)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
 -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 개시 후 1년 이내 지정된 양식으로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는 최종 결과물인 본 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게재된 학술논문 제출로 대체한다.
 -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잔여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4) 연구자는 “재단”이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5)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시 “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국문표기> “이 연구는 한세에스24문화재단의 0000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영문표기> “This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the HansaeYes24 Foundation in the year of 0000.”

6) 중복 사사표기는 허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 23.>

제13 조 (연구 기간 연장 규정)

- 1) 원칙적으로 연구 기간 연장은 허가하지 않는다.
- 2) 다만 예외적으로 합당한 사유(질병이나 상해 혹은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한함)가 있을 시 “재단”에서 별도 검토 후 승인여부를 연구자 및 산학에 통보한다.

제14조 (규정 미준수 연구자 제재 조치)

- 1) 연구자가 중간보고서 등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잔여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2) 연구자가 연구 종료 후 1년 내 KCI 등재지 또는 연구 종료 후 2년 내 국제학술지(A&HCI, SCOPUS)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할 시 잔여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잔여 연구비는 “재단”과 “연구자”의 연구약정서에 따라 연구비 총액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 전액에 해당한다.
- 3)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자가 범죄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재단”을 비방하거나 “재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및 그 밖에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은 잔여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지급한 연구비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해당 연구자를 연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 4) 규정 미준수 연구자의 제재 조치는 재단 사무국과 학술연구운영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거쳐 연구비 지급여부 및 환수를 결정한다.

제15조 (연구비 정산 규정)

- 1) 기관(대학 또는 연구소) 소속 연구자의 경우: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과 연구비 정산을 진행한다. “연구자”는 “재단”에 별도의 연구비 정산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2) 제8조 제4항 연구자의 경우: “연구자”는 “재단”에 별도의 연구비 정산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3) 만약 “연구자”가 연구비를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된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자”는 기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